별첨 1

#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 단 위 과 제 별 운 영 기 준

경 기 도 경 제 과 학 진 흥 원

# 목 차


| 번호 | 구분 | 서 식 명 | PAGE |
|---|---|---|---|
| 1 | 제품 혁신 | 시제품개발 지원 | 1 |
| 2 | | 디자인개발 지원 | 2 |
| 3 |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3 |
| 4 | |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 4 |
| 5 | |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 지원 | 7 |
| 6 |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지원 | 8 |
| 7 | |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9 |
| 8 | 시장 개척 | 홍보판로개척 지원 | 11 |
| 9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12 |
| 10 | 스마트 혁신 | 디지털 전환 지원 | 13 |
| 11 | | 온텍트 홍보판로 지원 | 14 |

# 1 시제품개발 지원

##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개발・제작 지원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결정 >**

○ 주관기관(GBSA)이 지정한 원가분석기관을 통하여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실시

○ 원가분석결과와 견적가와 차이가 5% 미만의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미반영

○ 원가분석결과와 견적가와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원가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70% (VAT 제외) 이내에서 지원금액으로 결정

##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경영 ·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과제추진이 중단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할 수 있음.
- 완성 금형 Mold base에 하기의 내용으로 각인 필수(불가할 경우 명판부착)

| | |
|---|---|
| 기 업 명 | ㈜0000 |
| 명 칭 | 000제품 Upper case |
| 제작일 / 완료일 | 00년 00월 00일 / 00년00월00일 |
| 대행기관 | ㈜0000 |
| 지원사업명 |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육성사업 |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서식 제21호] 견적서, 세부시행계산서<br>4.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
| 완료시 | 1. 원가분석 결과<br>2. 전자세금계산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br>4. (설계 변경시)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br>5. 금형완료 사진 |

## 2 디자인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 신규 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시각 디자인 : BI(브랜  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re-design) 위주
- 포장 디자인 : 제품박스, 포장 등 신규 및 리디자인(re-design) 등

  ☞ 홈페이지 · 카탈로그는 제외 (홍보판로개척 분야로 신청)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제품+시각, 시각+포장, 제품+포장+시각 등

❍ **유의사항**

- 대행기관 선정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대행기관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 > 디자인DB 조회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br>4. 견적서(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
| 완료시 | 1. 디자인개발 결과물<br>- 제품디자인 : 렌더링 이미지<br>- 시각디자인 : 매뉴얼<br>- 포장디자인 : 결과물 이미지<br>2. 전자세금계산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3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취득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 지원대상 : 해외특허(PCT 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지원항목 : 관납료, 심사료, 번역료, 대행기관 수임료, 선행기술조사비 등

❍ **참고사항**

- 협약기간 내 획득한 지식재산권 과제만 지원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해당 기업 내 출원/등록 당사자 개인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은 지원 제외
- 산업재산권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
| 완료시 | 1. 출원/등록 통지서 및 출원서/등록서 사본<br>※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br>2. (번역료/선행기술 조사비 청구시) 번역/선행기술 조사 결과물<br>3. 전자세금계산서<br>4. 관납료/심사료 영수증<br>5.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4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취득한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 지원

❍ **유의사항**

- 협약기간 내 획득한 규격인증 과제만 지원
- ISO, OHSAS, HACCP 등 시스템인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CoC 및 DoC 가능하며 관련 인증서, 시험결과물 제출 필수

| 구 성 | 내 용 |
|---|---|
| 인증비용 | 승인서발급수수료, 인증심사비, 인증기관 시험비용 |
| 시험비용 | 대행기관 또는 실험인증기관에서 시험한 비용만 인정 |
| 컨설팅비용 | 대행기관 컨설팅 비용 : 인건비, 기술자료제공비, 기타비용 (숙박비, 식비, 기타경비 등 제외) |

[참고 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참고 2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
| 완료시 | 1. 인증서, 시험결과물, 컨설팅 결과물 사본<br>2. 전자세금계산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참고 1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북미/남미]**

AAR(미국철도협회)
ABS(미국선급협회)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AGA(미국가스협회)
AMECA(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ANSI/BHMA(미국 건축 제품 인증)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PI(미국석유학회)
ASME(미국기계학회)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CSA(캐나다표준규격)
CTI(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성능)

**[아시아]**

ADR(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ARAI(인도 자동차 협회)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AS(호주규격협회)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BAA(일본자전거 안전 기준)
BIS(인도제품인증)
BSMI(대만표준규격)
CCC(중국필수인증)
CCS(중국선급인증)
CNS(대만국가표준)
CSEL(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F☆☆☆☆(일본친환경규격)
F-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GOST-K(카자흐스탄 인증)

**[유 럽]**

AENOR(스페인규격협회)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BA(영국건자재인증)
BSI BS EN489(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BSI(영국표준협회)
BV(프랑스선급협회)
CE(유럽공동체마크)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IN(독일규격협회)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co-Labeling(EU 환경마크)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SV(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기타 국제규격]**

AEM(장비제조/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ALE 1.0(RFID 제품 인증 )
ATP(부패성음식 수송적합승인)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BQB(블루투스제품호환성확보목적인증)
BSMI(표준검험국)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 시험인증)
FTC(화염시험 국제인증)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DOT(미국운수성)
Energy 스타(미국 에너지스타)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미국 식품 접촉물질(재료) 등록제도)
FDA(미국식품의약품국)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old Seal(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IC(캐나다통신규격)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NCHRP(미국고속도로시설물연구프로그램)

HK-STC(홍콩품질 및 검정센터)
JAS(일본농림규격)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IS(일본표준규격)
JPAL(일본의료기기 규제법)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MOH(중국보건부인증)
MPHPT(일본 우정 통신성)
NAL(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 방폭관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K(일본선급협회)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RS(러시아선급협회)
RTN(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EU 2092/91(EU의 유기농식품 인증)
EU Directive 76/768/EEC(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GL(독일선급협회)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KTW test certificate(독일 식수관련인증)
LFGB(독일식품용품법)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GOST(러시아표준규격)
GS(독일품질안전)
GTT(프랑스 GTT 선급)
IMQ(이탈리아전기술협회)
LR(영국선급협회)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GOTS(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HALAL(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MPR2(전자파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NFPA1971(가연성제품화재방지 국제규격)

NIJ(미국고속도로시설물연구프로그램)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PC(미국위생도기규격)
NMMA(미국 요트 보트 트레일러 관련인증)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NSF(미국위생규격)
PTCRB(북미휴대폰 인증)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UL(미국보험자협회안전시험소)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WHI(북미지역 건축자재인증)
WQA(미국수질협회)
3-A(미국 낙농 및 식품가공기기 인증)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SIRIM(말레이지아표준산업규격)
S-mark(일본안전규격)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TGA(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WELS(호주 물 효율 라벨링 제도)
소방안전 증명서(러시아)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위생허가
중국계량과학원
중국수입첨가제 등록
중국위생허가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F(프랑스표준규격)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RoHS(유럽전기 · 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NOP(유기제품 인증)
NPC(소음공해 규제기관)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PCI(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TCO05(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상기 외 기타 규격인 경우는 별도 지원여부를 결정

【 참고 2 】

#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상기 외 기타 규격인 경우는 별도 지원여부를 결정

## 5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 지원

❍ **지원내용** : 기술특허・산업시장・기술시장 정보분석,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특허 정보분석**

- 지원내용: 국내외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기술의 전개방향 예측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R&D과제 도출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분석내용: 기술개요, 기술특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주요 연구자 현황, 국내외 특허출원 동향, 주요 출원인 현황, 향후 기술개발 방향 전망 등

**- 산업시장 정보분석**

- 지원내용: 국내외 산업시장 DB 조사와 필드 서베이를 통해 관련 시장 현황, 시장 전개방향 및 수요예측 정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시장진입전략, 판매전략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분석내용: 시장 개요, 특성, 외부환경분석,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시장구조, 업체동향, 시장점유율, 수요예측 등

**- 기술시장 정보분석**

- 지원내용: 전문가 자문과 필드 서베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산업시장 현황 및 기술시장 전개방향과 수요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R&D과제 선정, 시장진입전략, 판매전략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분석내용: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국내외 특허출원동향 등 기술특허분석, 시장개요, 특성, 규모, 성장성, 수요예측 등 산업시장분석

**- 기술가치평가**

- 지원내용 : 기술성, 시장성 및 권리성 분석을 바탕으로 보유기술의 향후 창출 가능한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제시함으로써, 벤처에 대한 투자 여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또는 기술이전 및 거래계약시 기술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

**- 사업타당성 평가**

- 지원내용 :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투자 수익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확률 제고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
| 완료시 | 1. 최종 결과물(책자, 파일)<br>2. 전자세금계산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6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의 정의 :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 즉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
-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응용·개량 및 사업화를 위한 계획·실험·평가 등

### ❍ 지원대상

- 개발된 기술의 응용 및 개량 활동
-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기획, 기술기획 활동
- 사업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모델 수립,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판로개척, 마케팅, 시장진출시 전략 등 사업화 전략 수립
- 기타 기술사업화 자율과제(기업 여건에 맞춘 자율과제)

### ❍ 비목별 계상기준

- 세부항목의 비용은 다른 분야의 제한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상
- 인건비 제외
- 정보 활동비 : 시장 정보 분석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계상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는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구입
-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로 사무용 기자재(PC, 사무용 책상, 케비넷 등) 계상불가

### ❍ 유의사항

- 시제품 중 금형, 목업 제작의 경우 과제분야 중 '시제품개발'로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및 제품규격인증의 경우 과제분야 중 해당 분야로 지원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br>4. [서식 제22호] 과세 세부일정 및 사업비 산정내역 |
| 완료시 | 1. [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완료보고서<br>2. 용역업체 및 구매처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거래명세서, 제품사양서 등 제출<br>※ 증빙자료 추가요청할 수 있음<br>4. 전자세금계산서<br>5.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7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지역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검증(사업타당성,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지원
  -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 (혁신인증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
  - 기술(경영)혁신형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 녹색, 그린 인증 등

### ❍ 유의사항

- 컨설턴트는 GBSA 기업SOS넷 전문가(인력풀) 또는 전문 대행기관 활용
- [참고 3] 컨설턴트 등급별 자격 및 수당기준을 준용한다.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컨설턴트 이력 및 경력증명 서류<br>※ 기업SOS넷(www.giupsos.or.kr)에 등록된 경우 미제출 |
| 완료시 | 1. [서식 제25호] [서식 제46호] 완료보고서<br>2. [서식 제27호] 지도일지(일자별 사진자료 포함)<br>3. 컨설팅 결과물<br>4. 전자세금계산서<br>5.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참고 3 】

# 컨설턴트 등급별 자격 및 수당기준

| 등급 | 주요자격 및 경력 | 일일 수당 | 비고 |
|---|---|---|---|
| A |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br>2. 대학 부교수 이상<br>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br>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br>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br>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 300,000 | |
| B |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br>2. 대학 전임강사 이상<br>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br>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br>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br>6.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 250,000 | |
| C |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br>2. 대학 시간강사 이상<br>3. 민간기업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br>4.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 200,000 | |

- 컨설턴트의 등급은 위표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산정
- www.giupsos.or.kr에 등록되어있는 컨설턴트는 등록되어있는 등급을 준용.
  ☞ 미등록되어 있는 컨설턴트는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일일 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함.(4시간인 경우 일일수당의 1/2적용)

## 5 홍보판로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 완료되는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발행되는 분야(업종)별 전문 신문/잡지 광고 게재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 기업·제품의 홍보책자, (전자)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인쇄물 제작

❍ **유의사항**

- 홍보판로개척 지원은 참여기업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홍보 및 기업소개에 대한 내용만 지원 대상으로 함.
- 홍보물 인쇄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납품 당시의 사진(홍보물이 보일 수 있도록 상자는 개봉하되 홍보물을 상자에서 꺼낼 필요는 없음), 거래명세서 첨부
- TV, 라디오 광고 : 광고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표준단가 제출가능 과제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사보 등 기업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홍보물
- 동영상물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3D 컨텐츠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
| 완료시 | 1. 최종결과물<br>- 신문/잡지 광고, 홍보인쇄물 : 결과물 원본 (우편송부)<br>-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브로셔 : 결과물 파일<br>- 납품 사진 ※ **사업비에 인쇄비 포함 시**<br>2. 전자세금계산서<br>3. 거래명세서 ※ **사업비에 인쇄비 포함 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6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 **지원내용** :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전문·지역특화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과 같이 전시회가 주행사가 아닌 경우
- 경기도, 시·군, 타 기관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전년도 선지출한 전시회 계약금의 경우 협약 이후 개최하는 전시회의 경우 비용 인정
- 해외 전시회의 경우 해외 대행사 인정

❍ **지원금 지급 기준**

| 항 목 | | 세부내역 | 첨부서류 |
|---|---|---|---|
| 주최측 제공 | 부스료 | ○ 기본/독립 부스 임차료 | ○ 계약서 (전시회참가 신청서 대체가능)<br>○ 세금계산서 (주최측 발행)<br>○ 온라인 입금 영수증<br>(해외송금시 외화송금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br>○ 전시회 및 부스 전경(3매 이상) |
| | 기 본 장치비 | ○ 전기 / 전화 / LAN(전용선)<br>○ 고객관리용 기기 / 압축공기<br>○ 기타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 전시물품 운송료 | | ○ 선박/항공 운송료 (10CBM 이내) | ○ 운송사 발급견적서<br>○ 운송비 입금 영수증, 지출증빙 |
| | | ※ 지원금 산정시 운송료는 참가비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함. | |
| 부스설치 | | ○ 독립부스 | ○ 장치사 발급견적서<br>○ 장치비 입금 영수증, 지출증빙 |
| 지원 제외사항 | | ○ 광고비(디렉토리 등)<br>○ 홍보물 제작비 (배너, 현수막 등) | ○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성 비용<br>○ 대행기관이 제공치 않는 기타 비용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전시회 주관사 사업자등록증<br>**※ 국내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국내 대행기관 활용 시 1, 2 제출**<br>**※ 해외 전시회는 2 제출**<br>2.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견적서, 계약서, 인보이스 등)<br>3. 전시물품 운송(견적서, 입금영수증, 지출증빙 등) |
| 완료시 | 1. 결과 이미지(부스, 전시장 사진) **※ 전시회 명칭, 기업명 표시**<br>2. 전자세금계산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10 디지털 전환 지원

### ❍ 지원내용

- 디지털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등 지원

### ❍ 지원대상

- 진단비 : 디지털 전략, 업무 프로세스, IT 인프라 등 DX 수준 진단비
-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및 플렛폼 구축비
- 데이터 분석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분석비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
| 완료시 | 1. 최종 결과물(책자, 파일)<br>2. 전자세금계산서<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 11 온텍트 홍보판로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 완료되는 온텍트(Ontact) 홍보판로 지원

- CPC, 배너광고, 온라인플랫폼 입점, 인플루언서 광고 등 온라인 홍보 과제

❍ **유의사항**

- 홍보판로개척 지원은 참여기업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홍보 및 기업소개에 대한 내용만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제외**

- **사내에서 운영하는 온텍트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민간 인플루언서 광고**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시 |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br>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br>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
| 완료시 | 1.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결과/성과 보고서<br>2.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br>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